

## 심 판 청 구 서

청 구 인 ○ ○ ○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 - ○○○)

피청구인 △△도지사

심판청구의 대상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 〇 〇 . 〇 . 〇 . 자로 한 되는 처분의 내용 개인택시 면허신청 제외처분

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20○○. ○. ○.

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.자로 한

개인택시면허신청의 제외처분을 취소한다.

라는 재결을 구합니다.

심판청구의 이유 별지기재와 같음

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받았음.

첨부서류 별지기재와 같음

2000년 0월 0일

위 청구인 ○ ○ (인)

△ △ 도 지 사 귀중

## 심판청구의 이유



- 1. 청구인은 20○○. ○. ○.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던바, 피청구인은 같은 해 ○○. ○○. 청구인을 그 면허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청구인에게 보내왔습니다.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.
- 2. 첫째로 청구인은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증명 받았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1호 가목에 해당하여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,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면허신청 제출 후에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면허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.
- 3. 둘째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청구외 김□□ 및 이□□에게는 면허를 발급하면서 청구인만을 제외시켰습니다.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.

## 첨 부 서 류

1. 소갑제 1호증

1. 소갑제 2호증

처분통지서 사본 무사고운전경력증명

2000년 0월 0일

위 청구인 ○ ○ (인)

△ △ 도 지 사 귀중

(0	E11	대한법	は屋子	조공	<u>-</u>
1/2	<b>/</b> /				70
or.kr#					

제출기관	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 위원회(행정심판법 23조)	청구기간	・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(회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		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		
제출부수	청구서 및 부본 각1부	관련법규	행정심판법		
불 복 방 법	・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(행정심판법 51조)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 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. 다만,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・재결에 대한 행정소송(행정소송법 19조, 38조)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 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・다만,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(행정소송 법 18조)				